

의안번호	2209813
의 퇴 인	정춘생 의원
회 답 일	2025. 6. 30.
추 계 번호	25F229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시, 2026년 1,185억원, 2028년 1,185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3,555억원(연평균 1,18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개정안에 포함된 지방공사의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설의 경우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곤란함에 따라 동 비용추계는 불가능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 및 재산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제85조의2제1항제1호·제3호)	-1,185	-1,185	-1,185	-3,555	-1,185
- 취득세	-1,094	-1,094	-1,094	-3,282	-1,094
- 재산세	-91	-91	-91	-273	-9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5조의2제1항제1호·제3호·제6호 (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 ○ 지방공사의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신설(제6호) - 감면내용: 취득세 50% 감면 및 재산세 100% 면제 - 감면 적용기한: 2028.12.31	
2	안 제177조의2제1항제1호 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	○ 제85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최저한세율 미 적용으로 100% 면제 - 취득세 및 재산세 100%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%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나 해당조문은 100% 면제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5조의2 제1항제1호·제3호·제6호 (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5년 국회에서 의결하여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-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지방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1,09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2023년 재산세 감면실적인 9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지방공사의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설의 경우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곤란함에 따라 동 비용추계는 불가능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 개요)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·재산세를 감면(안 제85조의2제1항)
 -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50% 감면(제1호)
 - － 단,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

-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%를 감면(제3호)
 - 단,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28. 12. 31.
 -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철거예정인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50% 감면 및 재산세 면제 신설
 - 단,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
 - 감면 적용기한: 2028. 12. 31.
- (추계방법)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- (취득세) 2020년 950억원에서 2021년 1,347억원으로 증가, 이후 2023년 1,057억원으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,094억원
 - (재산세) 2023년 감면액인 9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안 제85조의2제1항의 재산세 감면액은 2023년 기준 135.6억원으로 제4호1)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실적(감면 적용기한: 2027.12.31.)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추계

[표 2]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: 2020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1,087.1	1,493.8	1,172.4	1,192.9
- 취득세	949.6	1,346.7	1,023.6	1,057.3
- 재산세	137.3	147.0	148.9	135.6 (90.9)

주: 2023년 ()는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실적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1)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또는 50% 감면으로 적용기한은 2027.12.31.으로 본 비용추계서의 대상이 아님

(2) 추계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시, 2026년 1,185억원, 2028년 1,185억원 등 2026~2028년 까지 3년간 총 3,555억원(연평균 1,18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개정안에 포함된 지방공사의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설의 경우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곤란함에 따라 동비용추계는 불가능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 및 재산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제85조의2제1항제1호·제3호)	-1,185	-1,185	-1,185	-3,555	-1,185
- 취득세	-1,094	-1,094	-1,094	-3,282	-1,094
- 재산세	-91	-91	-91	-273	-91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